문서번호	사회복지과-13859				
결재일자	2016.5.31.				
공개여부	부분공개				
방침번호	부구청장 방침 제321호				

주	무	관	자 활 고 용 팀 장	사회복지과장	복지환경국장	부	구	청	장
	안효중	안효중 한영옥 김은희		김유호		05, 정인	/31 겨 찬		
형									
조	전 생활보장팀장 송순득								
	주무관 김혜연								

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

🧾 성과분석 개요

◎ 근 거 :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(기금운용의 성과분석)

◎ 분석대상 : 자활기금 운용 성과(2015년 회계연도)

◎ 분석방법 : 안전행정부 기금 성과분석 기준에 의거 작성

◎ 내 용 :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

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후 제출

🔲 분석결과

◎ 기금 조성액 : 664백만원(2015년도말 기준)

◎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

(단위: 백만원)

'15년 운용현황		14 EL 1 EL 1 EL 1011	1			
수입	지출	'15년말 조성액	수입	지출	증감	비고
664	0	664	18	30	Δ12	

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 토 여 부	비고
추진근거	■ 법 령 □ 방 침 □ 별도규정 없음 ()	
사 업 추 진 유 형	□ 신규사업 ■ 기존사업 □ 일회성사업 ■ 계속사업 (년)	
예산확보 사 항	□ 전규 확보 필요 ■ 확보 완료 (국 , 시 , 구) □ 비예산 사업	예 산 팀 협 조 ()
이해관계인 유 무	○ 주 민 : 유□ () 무■ ○ 단 체 : 유□ () 무■	
타 자 원 활용가능성	○ 중앙부처 : 유□ () 무■ ○ 서울시 : 유□ () 무■ ○ 민간단체 : 유□ () 무■ ○ 기업체 : 유□ () 무■	
홍 보 필 요 성	○ 홍보대상 : 유□ () 무■ ○ 보도자료 : 유□ 무■	홍보물심사 협 조 ()

2016년도 자활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자활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함.

I 관련근거

- **D**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, 동법 시행령 제8조
 - ●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성과분석 기준」에 의거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
 - ◎ 법 제14조에 따른「성과분석 보고서」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필요

Ⅱ 기금운용 현황

- 설치근거
 - ◎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
 - ◎ 서울특별시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
- 설치목적
 - 지역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·효과적 수행
- 설치연도 : 2011년
- □ 조성목표액: 5억원
- □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

(단위: 백만원)

'15년도 운용현황		'15년도말	'16년도 운용계획		비고	
수입	지출	조 성 액	수입	지출	증감	11 14
664	0	664	18	30	Δ12	

Ш

분석결과

🔲 총 평

- ◎ 자활기금은 2011년 설치, 2014년도 말 현재 조성목표액 (5억)초과 달성
- 2011~ 2014년 까지 기금조성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지출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였으며, 2014년 말 현재 당초 조성목표액을 달성함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위해
- 2015년 택배자활근로사업단의 차량구입 지원 등을 통한 용도로 활용코자 하였으나, 2014년 국시비 매칭 자활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기금절감 및 사업조기추진을 위하여 자활사업비 재원으로 택배사업단의 차량구입 지원 함.
- 향후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나, 자활근로사업의 점포임대등의 기금사업의 효과성이 큰 사업을 실시를 위해 2015년 미사용 기금을 적립함.

🧻 사업운영의 성과

◎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

(단위:백만원)

'14년도			'15년도			
최초계획	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			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		
10	0	0	50	0	О	

◎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

구 분	사업계획	사업실적	달성도
'14년도	○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: 10백만원	_	0%
'15년도	○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: 50백만원	-	0%

III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

◎ 기금의 설치목적

설치근거	설치목적	주요사업 내용	목적 달성정도	비	고
	자활지원 사업의	·자활기업, 자활근로사업단, 개인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점포 임대 지원 및 사업자금 대여 ·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·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	해당없음		

- ◎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: '해당없음'
-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·외부기관의 감사, 지방의회, 감사 등의 지적사항: '해당없음'
- ◎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성 여부 논의 : '해당없음'
- ◎ 기금을 존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: '해당없음'

사업의 유사성

- ◎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 · 유사 사업현황 : '해당없음'
-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, 특별회계, 타 기금과의 중복성·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: '의견없음'

□ 재원조성의 적정성

◎ 조성방법 : 자활사업 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

◎ 기금총액(2015. 12월말) : 664백만원

◎ 연도별 수입 및 지출실적(최근 3년간)

(단위: 백만원)

	구 분	'13		'14		'15	
	합 계	445	100%	628	100%	664	100%
	전입금						
	보조금						
	차입금						
수 입	융자금회수(이자포함)						
一 日	예탁금원금회수						
	예치금회수	136	30%	445	71%	628	94%
	예수금						
	이자수입	5	1%	15	2%	15	2%
	기타수입	304	69%	168	27%	21	4%
	합계	0	%	0	%	0	%
	비융자성사업비						
	융자성사업비						
	인력운영비						
지 출	기본경비						
기 글	예탁금						
	예치금						
	차입금 원리금상환						
	예수금 원리금상환						
	기타지출						

※ 비율(%)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(예- 전입금/합계)

D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 사항

- 매년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도모
- 자활기금을 활용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사업을 탄력적·효과적으로 추진

Ⅳ 성과분석 심의

■ 심의기간: 2016. 6.9 ~ 6.10

■ 심의주체 :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(10명)

◎ 위원장 : 부구청장

◎ 위 원 : 복지환경국장, 복지정책과장, 사회복지과장

동작구의회 의원 김현상, 최정춘

이상은, 문순희, 김경태, 김예리

I 심의안건: 2016년도 자활기금 성과분석

D 심의방법: 서면심의

■ **의결정족수**: 심의위원 과반수 (가·부)로 의결

Ⅴ 행정사항

> 자활기금 성과분석 결과 제출 : 기획예산과 (2016, 6, 14한)

붙임: 1.2016년 자활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(안)1부

2. 2016년 제5차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자료 1부

3. 심의의결서 1부. 끝.